

연구관 · 지도관의 직위지정 기준표(제117조 관련)

1. 연구관

구 분		직위지정 기준
1호	가목	인사관리 및 수당지급 등에 있어서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상당 직위
	나목	인사관리 및 수당지급 등에 있어서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상당 직위
	다목	인사관리 및 수당지급 등에 있어서 일반직공무원 4급 상당 직위
	라목	인사관리 및 수당지급 등에 있어서 일반직공무원 5급 상당 직위
2호	가목	인사관리 및 수당지급 등에 있어서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상당 직위
	나목	인사관리 및 수당지급 등에 있어서 일반직공무원 4급 상당 직위
	다목	인사관리 및 수당지급 등에 있어서 일반직공무원 5급 상당 직위
3호	가목	인사관리 및 수당지급 등에 있어서 일반직공무원 4급 상당 직위 또는 제1호가목·나목·다목 및 제2호가목·나목의 경력이 있는 연구관
	나목	인사관리 및 수당지급 등에 있어서 일반직공무원 5급 상당 직위

2. 지도관

구 분		직위지정 기준
1호	가목	인사관리 및 수당지급 등에 있어서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상당 직위
	나목	인사관리 및 수당지급 등에 있어서 일반직공무원 4급 상당 직위
	다목	인사관리 및 수당지급 등에 있어서 일반직공무원 5급 상당 직위
2호	가목	인사관리 및 수당지급 등에 있어서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상당 직위
	나목	인사관리 및 수당지급 등에 있어서 일반직공무원 4급 상당 직위
	다목	인사관리 및 수당지급 등에 있어서 일반직공무원 5급 상당 직위
3호	가목	인사관리 및 수당지급 등에 있어서 일반직공무원 4급 상당 직위 또는 제1호가목·나목 및 제2호가목·나목의 경력이 있는 지도관
	나목	인사관리 및 수당지급 등에 있어서 일반직공무원 5급 상당 직위